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4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2.

발 의 자 : 한준호 · 박상혁 · 이기현

박 정 · 김영환 · 김주영

최혁진 · 박지원 · 윤후덕

김성희 · 모경중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의 건설 및 보수, 유지·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음.

「도로법」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된 일산대교의 경우 한강을 가로지르는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. 이는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통행료 등 지원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범위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86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제2항 본문 중 “유지·관리에”를 “유지·관리 및 운영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